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 9. 9.(수)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최경천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0년 8월 26일
- 회부일자: 2020년 8월 28일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별휴가 관련 규정 개정(안 제16조)
 - 장기재직휴가 휴가 일수 확대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신설>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	20일	

- 종전 학습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변경하고 대상기관 등을 확대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명 칭	학습휴가	자기계발휴가	
대상기관	각급학교	전체기관	
휴가일수	연간 3일	연간 5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
 - 제9조(출장공무원)
 -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항, 제5항
 -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제18조(병가)
 - 제19조(특별휴가) 제2항, 제6항
- [별표1]선서문 중 세부 문구 삭제
- [별표4]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규정 마련 및 연가가산 제한규정 삭제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문구 삭제
- [별표5]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1일의 경조사휴가를 신설하고,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출산 경조사 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문구 삭제·조정 등) 보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전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편에 규정된 내용 중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비상근무의 발령과 복무에 관하여 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근무와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연가, 특별휴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안 제19조에서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음.
-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5항에서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였는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는 점¹⁾에서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장기재직휴가 관련 신·구 규정 비교 〉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신설>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	20일	

1) 현재 충청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제천시와 음성군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6조제7항에서 기존 학습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변경하면서, 대상자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휴가일수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근무기관에 따른 휴가일수 불균형 해소 및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안 제16조제8항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비롯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취지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조례의 개정에 따라 특별휴가가 확대되어도 지방교육행정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책임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